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27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 : 임광현 · 임오경 · 진선미

박희승 • 박민규 • 황명선

박홍배 · 정태호 · 차지호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소득이 일정 수준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

2제1항제1호).

나. 납부유예의 소득 기준 중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안 제20조의2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1세대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7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납부유예) ① 관할세무	제20조의2(납부유예) ①
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	
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	<u>-</u>
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u>1세대 1주</u>	1 <u>1세대 1주</u>
<u>택자</u> 일 것	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
	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가
액이 <u>7천만원</u> 이하일 것	<u>1억원</u>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 등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생략)

② ~ ⑦ (생 략)

나
1억원
4. (현행과 같음)
4. (연행가 崔吉)
② ~ ⑦ (현행과 같음)